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65

발의연월일: 2025. 1. 9.

발 의 자:김위상·박준태·김선교

이종배 · 임이자 · 박정하

강승규 • 김승수 • 김소희

우재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의무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그동안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그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 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,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 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, 제10조의 3 신설).

법률 제 호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중 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"을 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"으로 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 평가) ①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학교환경교육의 실시)	제10조의2(학교환경교육의 실시)
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	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
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	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
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	<u> 등학교의 장</u>
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	
<u> <신 설></u>	제10조의3(학교환경교육의 추진
	성과 평가) ① 환경부장관은 3
	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
	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
	의 추진성과 평가의 내용, 방법
	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